

제10기 제2회(2024학년도 제2회) 익산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 결과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기 제2회(2024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랍니다.

1. 개최일시: 2024. 7. 17.(수) 11:00~
2. 참석인원: 정원 11명, 참석 7명
3. 회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주요내용	담당부서 ☎								
1	익산한벌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 규칙의 관련 내용을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결석 자에 대한 정원 외 학적관리 기준 수정 2. 학생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내용 신설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수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조항</th> <th style="width: 9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제10조 (학생 정원)</td> <td>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교 수업 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td> </tr> <tr> <td>제8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장 신설 '24.7.22.')</td> <td> 제3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td> </tr> <tr> <td>제46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td> <td>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td> </tr> </tbody> </table>	조항	내용	제10조 (학생 정원)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교 수업 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8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장 신설 '24.7.22.')	제3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6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교무실 ☎ 839-1500
조항	내용											
제10조 (학생 정원)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교 수업 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8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장 신설 '24.7.22.')	제3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6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익산한벌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한 책임 규정의 변경 필요성에 따라 학생 생활규정의 관련 내용을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이 가지는 타인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수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조항</th> <th style="width: 9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제9조 (수업 태도)</td> <td>⑦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td> </tr> </tbody> </table>	조항	내용	제9조 (수업 태도)	⑦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교무실 ☎ 839-1500				
조항	내용											
제9조 (수업 태도)	⑦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3	2024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정 예산액: 997,830천원 -경정 예산액: 1,652,562천원(654,732천원 증액) 	행정실 ☎ 839-1502								

2024. 7. 17.

익산한벌초등학교장